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1. 제정 이유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286호, 2023. 3. 28. 공포, 2024. 3. 29. 시행)됨에 따라 기초조사, 기본·시행계획의 수립·승인 방법 및 절차, 농촌특화지구의 지정범위 등, 주민제안의 내용 및 처리 절차,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방침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

공고 등(안 제2~4조)

- 1) 농촌 인구 및 가구 현황, 농촌 주거 및 생활환경 현황, 농촌 경제·산업 구조 현황 등 기초조사의 내용을 명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 측량 자료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 2) 국토종합계획 변경으로 그 내용의 반영 및 도시·군계획의 단순한 변경의 반영, 단순 오류 수정의 경우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
- 3) 기본방침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바로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도록 함

나.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 (안 제5조)

- 1)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실시 방법, 자료의 활용·관리 등 기본방침의 기초조사(제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
- 2) 기초조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가능

다.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기준 및 방법, 승인 등(안 제6조, 제8조)

-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그 밖에 세부적 기준 및 방법을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2)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의 기본계획 승인을 위해 계획 수립권자가 기본계획 및 의견청취 결과 등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3)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승인 없이 변경 가능한 경우를 명시

라.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기준 및 방법, 승인 등(안 제9조, 제10조)

- 1)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그 밖에 세부 사항을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2)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의 시행계획 승인을 위해 계획 수립권자가 시행계획 및 의견청취 결과 등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3)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승인 없이 변경 가능한 경우를 명시

마. 농촌특화지구의 종류별 기준 등(안 제11조)

- 1) 농촌특화지구 종류별 지정할 수 있는 국토계획법 상 용도지역 및 지정 기준을 별표로 규정함

- 2) 그 밖에 농촌특화지구 종류별 입지, 규모 및 대상 등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바.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안 제12조)

- 1) 시장·군수 및 특별자치시장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지구의 면적과 수 등에 대해 농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2) 농촌특화지구 중 재생에너지지구의 총면적과 총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사. 농촌협약의 체결 등(안 제14조)

- 1) 농식품부장관은 해당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과 협의하여 농촌협약서를 작성하고 협약을 체결함
- 2) 농촌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착수연도 기준 2년 이상 지방비를 편성하지 않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아. 주민협정의 인가·공고, 변경 및 폐지 등(안 제15조, 제17조)

- 1) 주민협정의 체결·변경·폐지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협정의 명칭, 효력 발생 시기, 사유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 2) 인가한 경우 공보에 게재하고 주민협정 대상 지역이 속한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30일 이상 열람하도록 함
- 3) 협정체결자 및 주민협의회 구성원의 주소 변경 또는 협정서의 명백한 오류 수정의 경우는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협정체결자 과반수 동의 및 인가·공고 없이 주민협정 변경이 가능

자.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등(안 제16조)

- 1) 주민협회의의 위원은 협정체결자 중 선임하고 대표자 1인을 둘 수 있으며 다수결의 방법으로 대표자를 선임하고 그 임기를 결정함
- 2) 대표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안건을 통보하여야 하며 협의회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차. 주민협정 이행지원 등(안 제18조)

- 1)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가 필요한 비용 지원을 위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규정하고,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카. 사업계획의 승인(안 제20조)

- 1)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승인받고자 할 때 해당 사업계획과 함께 의제 가능한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관련 서류,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2) 사업계획의 고시는 공보에 게재하며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함

타. 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대체조직(안 제21조, 제22조)

- 1)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는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고,
- 2) 광역·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시·도 및 시·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가 각각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

파.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및 그 취소(안 제25조)

- 1) 지정 가능 기관을 규정하고, 지정 가능 기관 중 하나 이상을 농촌
공간중앙지원기관과 광역·기초지원기관으로 지정 가능
- 2)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을 지정·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

3. 참고사항

가. 추진일정

- 1) 제·개정안 확정 : '23. 9월
- 2) 관계부처협의 : '23. 10월
- 3) 입법예고 : '23. 12월
- 4)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 '24. 1월 ~ 2월
- 5) 차관·국무회의 : '24. 3월
- 6) 공포 : '24. 3월

나. 재정수반 여부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제정안(별첨)

< 별첨 >

대통령령 제 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제2조(기본방침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 인구 및 가구 현황
2. 농촌 주거 및 생활환경 현황
3. 농촌 경제·산업 구조 현황
4. 농촌생활서비스시설 분포 및 이용·제공 현황
5. 농촌 토지 이용 및 경관 보전·관리 현황
6. 농촌의 난개발 요소와 농촌특화지구 지정 현황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6조제4항에 의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때에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기초조사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방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이 변경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명칭 등 단순한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와 비슷한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4조(기본방침의 수립 절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시행하여야 하는 해의 직전 연도 12월 31일까지 기본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바로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 ① 계획수립권자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실시하는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기초조사의 그 실시 방법 및 자료의 활용·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획수립권자”로, “법 제6조제4항”은 “법 제7조제4항”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로 각각 본다.

②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해당 기초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5. 그 밖에 계획수립권자가 기초조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민간기관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기준 및 방법) ①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농촌공간의 구조 및 토지이용 현황, 경제·사회·환경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촌공간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것
2.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은 자연환경과 경관의 보전, 주민정주 및 농업생산 등 농촌 공간구조의 특징을 고려하고 조화롭게 개발·이용·보전하기 위한 재구조화 및 재생전략의 수립·이행이 가능한 범위로 설정할 것
3.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 중인 각종 계획과의 부합성,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우선 순위를 정할 것
4. 농촌특화지구는 농촌마을의 정주 기능 보호 및 생산활동과 토지 이용의 조화를 촉진하며, 농촌자원·경관의 가치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것
5. 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에 반영할 것

②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공청회 개최 등) ①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

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기본계획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내용

4. 그 밖에 계획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계획수립권자에게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의 변경: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
2. 시행계획의 변경: 제10조제2항 각 호의 경우

제8조(기본계획의 승인) ① 계획수립권자(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

2. 법 제8조에 따른 의견청취 결과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 결과

4. 그 밖에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본방침의 단순한 변경으로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와 비슷한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공고는 해당 시·군(광역시의 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변경 기준 및 방법) ① 계획수립권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의 공간적특성을 고려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발전 목표, 전략 및 과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것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이 장소를 중심으로 통합·연계되도록 실행계획을 제시할 것

3. 농촌특화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운용 및 관리 방향에 따라 해당 지구의 구체적 입지, 규모 및 대상 등을 포함할 것

4. 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에 반영할 것

5. 유·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발굴하여 그 활용방안을 포함할 것

②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시행계획의 승인) ①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시행계획에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첨부하여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이 단순히 변경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0조제2항제8호 또는 제11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총 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10조제2항제6호에 따라 지정한 농촌특화지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5.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와 비슷한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11조(농촌특화지구의 종류별 기준 등) ①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농촌특화지구의 종류별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그 밖에 농촌특화지구의 종류별 입지, 규모 및 대상 등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와 특별자치시장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지구의 면적과 수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와 시·군별로 농촌특화지구 중 재생에너지지구의 총면적과 총수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도서는 축척 1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수치지형도를 포함한다)에 농촌특화지구를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도·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농촌특화지구의 도서 등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주민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과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제안서를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내용

다. 사업의 재원

라. 사업의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마. 그 밖에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등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가. 지구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나. 지구의 위치 및 면적

다. 지구의 정비 및 관리 방향

라. 법 제22조에 따른 주민협정을 체결한 경우 그 내용

마. 지구의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동의 여부

사.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제안을 시행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에 자문을 거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 제안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그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장 농촌협약 및 주민협정

제14조(농촌협약의 체결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농촌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농촌협약 체결 신청서에 포함된 사업을 검토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및 의견 수렴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해당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과 협의하여 농촌협약서를 작성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농촌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착수연도 기준 2년 이상 지방비를 편성하지 아니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농촌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주민협정의 인가·공고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협정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 대표자가 법 제22조제3항 및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협정의 체결 및 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협정 인가(변경인가, 폐지인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주민협정의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을 인가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정 대상 지역이 속한 관할 지역의 읍·면·동 사무소에 주민협정서 등 주민협정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제16조(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① 주민협의회의 위원은 협정체결자 중에서 선임한다.

- ② 주민협의회는 대표자 1인을 둘 수 있으며, 주민협의회 위원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대표자를 선임하고 그 임기를 결정한다.
- ③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민협의회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④ 주민협의회의 대표자는 회의를 개최하려면 개최 7일 전까지 주민협의회 위원에게 개최사실과 회의 안건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 ⑤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주민협의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표자의 해임에 관하여는 출석위원의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17조(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법 제22조제2항5호의 사항 중 해당 협정체결자 및 주민협의회 구성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 2. 주민협정서의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와 비슷한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 ②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협정체결자인 주

민 등으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민협정을 인가한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운영규정 변경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18조(주민협정 이행지원 등) ①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
 3.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4. 사업비용(지원이 필요한 금액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의 시행

제19조(사업시행자)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제20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사업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2.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또는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에 필요한 서류

②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비(물가변동에 따른 변동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와 비슷한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③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고시는 해당 지자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제5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의 추진체계

제21조(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조직)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기능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22조(광역·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대체조직)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와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의 기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도에 설치되는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와 시·군에 설치되는 시·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가 각각 대신할 수 있다.

제23조(광역·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의 구성·운영) ①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및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이하 이 조에서 “광역·기초정책심의회의”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광역·기초정책심의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촌공간의 구조와 토지이용 및 경제·사회·교육·문화 환경 등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광역·기초정책심의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광역·기초정책심의회의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

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광역·기초정책심의회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지원조직의 업무) 법 제3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에 따른 주민협정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35조에 따른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5. 법 제44조에 따른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제25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및 그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관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②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관을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또는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방연구원
 5.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법 제35조제2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35조제1항·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①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역의 농촌 지역개발 및 재생 지원 분야의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및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제1호의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관 또는 사업운영규정
2.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배치계획서
3. 법 제35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서
4. 업무 수행체계가 명시된 조직도
5. 최근 2년간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조사·연구 실적 목록(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지원기관의 지정서(지정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③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업무 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실적 평가의 기준·절차 등) ① 법 제36조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이하 이 조에서 “실적 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기본계획: 수립한 해로부터 5년이 되는 해

2. 시행계획: 수립한 해로부터 3년 및 5년이 되는 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적평가를 위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평가가 실시되는 해의 연도 3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적평가를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실적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자료 제출 및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농촌공간모니터링체계 구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군별 인구, 경제, 농촌생활권 및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현황을 매년 모니터링하며 법 제44조에 따라 구축된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에서 구축하여 그 결과를 관리한다.

제29조(업무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군에 대하여 실시되는 실적평가를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① 법 제4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이 법 제28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원활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추가적인 감경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지방세 감면 절차) 법 제4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지방세 감면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 승인신청서에 지방세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른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에서 수집·관리하는 정보 및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부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구축하려는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 다른 정보체계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개발·검증·관리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7장 별칙

제3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농촌특화지구의 종류별 지정 범위 및 기준(제11조 관련)

1. 지정 범위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다음의 용도지역에 한정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를 종류별로 지정할 수 있다.

종류	지정 범위
농촌마을보호지구	도시지역(녹지지역에 한정한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농촌산업지구	도시지역(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에 한정한다),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축산지구	도시지역(녹지지역에 한정한다),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도시지역(녹지지역에 한정한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농업유산지구	도시지역(녹지지역에 한정한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2. 지정 기준

제1호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종류별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종류	지정 기준
농촌마을보호지구	1) 집단화된 주거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정 할 수 있다. 2) 농촌마을보호지구의 경계는 도로, 지형, 지물을 감안하여 설정하되, 농촌마을이 분할되지 않고 미래 신규 주거지 수요와 농촌위해시설의 입지 제한 등을 고려하여, 마을의 가장 외곽에 있는 주택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완충영역을 포함하여 설정한다. 3) 농촌마을보호지구 안에서의 용도, 입지 등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와 제84조 및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제3편 제2장 제7절의 취락지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4) 농촌마을보호지구를 지정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취락지구(집단취락지구는 제외한다.)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농촌산업지구	1) 농촌마을 주변 공장, 창고, 제조업소, 농·임업용 시설 등 개별 입지하고 있는 소규모 시설의 이전 및 집단화가 가능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농촌산업지구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주변에 형성된 주거지, 농지, 하천 등의 환경을 훼손하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종류	지정 기준
축산지구	1) 농촌마을 인근에 개별 입지한 축사를 이전하거나 축사 관련 사육, 가공, 자원화 등 부대시설을 집적하여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가축사육 및 축산가공 관련 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에 친환경 또는 현대적 시설로 개·보수하거나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지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2) 축산지구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주변에 형성된 주거지, 농지, 하천 등의 환경을 훼손하는지의 여부 고려하여야 한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1)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생산, 제조·가공, 유통·관광 등의 시설 집적화가 가능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농촌융복합산업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주변에 형성된 주거지, 농지, 하천 등의 환경을 침해하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재생에너지지구	1) 재생에너지시설이 무질서하게 배치되어 있어 계획적 재배치 또는 집단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환경친화적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2) 재생에너지지구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주변에 형성된 주거지, 농지, 하천 등의 환경을 훼손하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경관농업지구	1) 농촌마을 주변 경관작물을 집단화하여 재배하는 농경지와 그 주변에 대한 우수경관 관리·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의 대상 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지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2) 경관농업지구는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조례로 규모에 관한 기준을 두려는 경우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집단지 최소면적을 준용할 수 있다.
농업유산지구	1) 세계중요농업유산 및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지역과 그 밖에 농업적·생태적·지식적·문화적·경관적 보전 가치가 있어 종합적인 토지이용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2) 농업유산지구는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규모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지역이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핵심자원의 분포와 농업유산 보전 활동을 기준으로 핵심구역을 설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농업유산지구 내 농업유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에 따른다.

과태료의 부과 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2조에 따른 주민협정 인가를 받은 자	법 제47조1항 제1호	100	150	200
나. 법 제37조에 따른 업무나 회계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법 제47조1항 제2호	100	150	200

[]인가
주민협정 []변경인가 신청서
[]폐지인가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	------	------	------	-----

()체결 ()변경 할 주민협정 명칭 ()폐지	
()체결 ()변경 의 효력발생 시기 ()폐지	
()체결 의 유효기간 ()변경	
()체결 ()변경 의 사유 ()폐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협정의 인가(변경인가, 폐지인가)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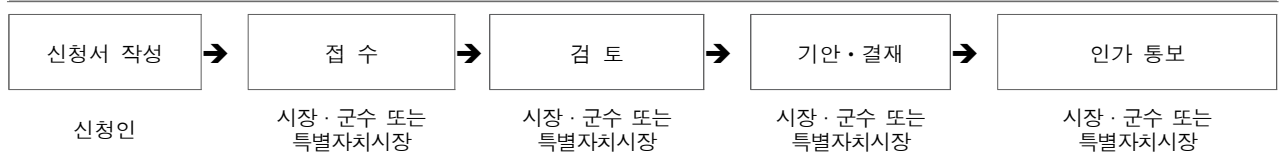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 귀하

첨부서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첨부서류 1. 주민협정서 2. 대상 토지 면적(국유지·공유지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동의서(주민협정을 체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협정체결자 과반수 동의서(주민협정의 경미하지 않은 사항의 변경·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주민협정서 변경 대비표(주민협정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주민협정의 체결 및 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지정신청서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열람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른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사업운영규정 2.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배치계획서 3. 법 제35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4. 업무 수행체계가 명시된 조직도 5. 최근 2년간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조사·연구 실적 목록(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지원기관의 지정서(지정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및 시·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담당부서)

지방세 감면 승인신청서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면적(수량)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산출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사유			
감면 안내방법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지방세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시장·군수 등)	→	관계증명서류 (시장·군수 등)	→	접수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도지사)	→	증명 서류 확인 및 검토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도지사)	→	지방세 감면 승인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도지사)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